2016 보고서

: 2016. 3. 23 (수) 오후5시

* 장소 : 사랑의교회

Korean Diakonia
코리안 디아코니아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5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d1225@hanmail.net

목 차

2016 개회예배 순서 …… 3

■ 2016 정기총회 순서 …… 4

A. 조직

1. 회원명부 …… 5
2. 법인이사명부 …… 7
3. 임역원명부 …… 8

B. 회의록

1. 총 회 …… 10
2. 이사회 …… 11

C. 2015년 사업보고 …… 14

D. 2015년 감사보고 …… 21

E. 2015년 결산보고 …… 23

F. 2016년 사업계획 …… 25

G. 2016년 예산( ) …… 34

H. 정관변경 대조표 …… 36

I. 정관 …… 40

개회예배

일시 : 2016. 3. 23 (수) 오후5시

○ 인도 : 정성진 목사(상임이사)

묵　　도 ..... 다 같 이

찬　　양 .....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다 같 이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3.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게 참 복을 내리신다

후렴 :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　　도 ..... 최희범 목사(상임고문)

말　　씀 ..... 오정현 목사(WD 이사장)

찬　　양 .....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 다 같 이

1. 주님의 마을을 본받는자 그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모습 내눈에 안보이며 그음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영혼 날마다 주를만나 신령한 말씀 늘배우도다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뭇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후렴 :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축　　도 ..... 권태진 목사(공동대표)

정기총회

: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1. 의장인사
2. 회원점명
3. 회순채택 …… 다 같 이
4. 2015년도 사업보고(p.14)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5. 2015년도 감사보고(p.21) …… 김광한 장로 (감 사)
6. 2015년도 결산보고(p.23) …… 박홍자 장로 (부 회 계)
7. 2016년도 사업계획(p.25)/예산(안)보고(p.34)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8.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사업계획보고(p.30)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9.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조직위원회 주요임원 위촉(p.33)
10. 정관 개정 (p.36)
11. 기타안건 …… 회 원 중
12. 광 고 …… 천영철 목사 (사무총장)
13. 폐회기도 …… 김경원 목사 (공동대표)

A.

1.

(세계빈곤퇴치회)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영만(진흥교회)
강용규(한신교회)
강인석(시흥평안교회)
강준모(남성교회)
강춘길
고경환(순복음원당교회)
고명성(추점교회)
고미란(푸른잎사귀봉사단)
곽주환(베다니교회)
구자영(안성성결교회)
권오륜(발음교회)
권태경(백합노인복지센터)
권태경(영동은혜교회)
길자연(한기총, 왕성교회)
김경수(안동벧엘교회)
김광본(연합총회)
김광석(㈜참존회장)
김근상(서울주교좌성당)
김근중(수원늘푸른교회)
김대근(숭실대학교)
김덕주(기독교선교횃불재단)
김동권(진주교회 원로목사)
김득린(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연(동성진흥)
김명현(이천순복음교회)
김문훈(포도원교회)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김범곤(예수사랑선교회)
김병민(충남동산교회)
김병삼(만나교회)
김봉태(수원영원교회)
김상길(기하성총회협동총무)
김상복(소망교회)
김상현(부광교회)
김선도(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성수(예장대신사회부)
김성식(순복음부흥교회)
김성원(광주중흥교회)
김성철(백석대사회복지학과)
김수웅(한국기독실업인회)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김영수(영일교회)
김영진(민주통합당)
김영철(장수마을교회)
김영헌(은평감리교회)
김요셉(선린교회)
김요셉(원천(침례)교회)
김용상(원주제일교회)
김원광(중계충성교회)
김원교(참좋은교회)
김원호(석삼침례교회)
김유수(광주월광교회)
김윤석(좋은이웃교회)
김은기(전 극동방송)
김은섭(도봉교회)
김은호(오륜교회)
김인기(성장교회)
김인중(안산동산교회)
김인환(성은감리교회)
김일환(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서(제주영락교회)
김정석(광림교회)
김정일(한국노인대학총연합회)
김종엽(가현교회)
김종웅(부평제일교회)
김종준(꽃동산교회)
김종훈(월곡교회)
김준수(성덕중앙교회)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김찬곤(안양석수교회)
김창배(영광교회)
김철봉(부산사직동교회)
김치성(통합교육부총무)
김한중(연세대학교)
김해성(지구촌사랑나눔)
김형준(동안교회)
김혜경(백석대사회복지학과)
김호민(대전권능교회)
김흥규(인천내리교회)
나진균(월곶제일감리교회)
노승숙(전 국가조찬기도회)
노태철(제일성결교회)
단필호(기독교연합봉사회)
류두현(나사렛교회)
류영모(한소망교회)
류종훈(한세대사회복지학과)
림형석(평촌교회)
명성훈(순복음성시교회)
모상련(목포주안교회)
문강원(원천교회)
박경배(송촌장로교회)
박광석(일산벧엘교회)
박권배(상도교회)
박귀영(한영신대사회복지학과)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박래창(예장통합총회사회봉사부)
박명성(성신교회)
박삼열(송월교회)
박상완(신갈백향목교회)
박상철(예일교회)
박성민(한국CCC)
박성철(신원그룹)
박순영(장충단교회)
박용호(북수원교회)
박원호(주님의교회)
박유철(충주서남교회)
박윤석(청주우암교회)
박응순(주안중앙교회)
박정근(부산영안침례교회)
박종순(충신교회)
박종언(예장합신총무)
박종천(가나안의집)
박지태(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박진구(안디옥교회)

(기쁨의교회)
박창환(꿈꾸는교회)
박천응(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일(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박철규(새마음교회)
박현식(대길교회)
박흥철(분당매일교회)
방수성(시흥교회)
방원철(성광교회)
배성식(수지영락교회)
배숙한(종교감리교회)
배윤규(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배진기(포항안디옥교회)
백광진(잠실동교회)
백인범(새사랑교회)
백종윤(청학영락교회)
서도형(홍은교회)
서임중(포항중앙교회)
서정오(동숭교회)
서철(상동교회)
서호석(창천교회)
성열준(부산디지털대학교)
성창용(충무교회)
손달익(서문교회)
송귀옥(목포영락교회)
송기식(수원성결교회)
송태근(강남교회)
신동헌(영락사회복지재단)
신상현(울산미포교회)
신성남(예수가족교회)
신용한(국제기독실업인회)
신정호(동신교회)
신화석(안디옥성결교회)
안강희(GAP국제대표)
안기성(거리의천사들)
안요셉(글로리아교회)
안용운(온천교회)
안홍철(한아봉사회)
안희묵(공주꿈에교회)
양세진(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양해규(굿윌스토어)
어덕선(열방교회)
엄신형(중흥교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여성삼(천호동교회)
오영택(월드비전교회)
오진석(하나성결교회)
옥성석(충정교회)
원준희(사도교회)
원팔연(전주바울교회)
유관재(성광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유성희(대한YWCA)
유영완(하늘중앙감리교회)
유인석(과천소망교회)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육광철(예장합정사회복지위원회)
육순종(성북교회)
윤석전(연세중앙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윤재철(대구중앙교회)
윤지환(안보와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윤호균(화광교회)
윤희구(창원한빛교회)
이강호(봉천성결교회)
이건영(인천제2교회)
이경림(전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희(윤영노)(하늘중앙교회)
이규석
이규왕(수원제일교회)
이규환(부천목양교회)
이근수(홍성교회)
이기우(감람교회)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이상일(삼선교회)
이성우(미국LA우리민족돕기)
이수영(새문안교회)
이순천(안중앙교회)
이승영(새벽교회)
이승희(반야월교회)
이신웅(신길교회)
이영식(분당영광교회)
이용호(서울영천교회)
이인선(열림교회)
이재옥(화평교회)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재창(수원순복음교회)
이재천(CBS기독교방송)
이재훈(은제교회)
이정우(지구촌교회사회복지부)
이제훈(어린이재단/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종관(울산시민교회)
이종윤(서울교회)
이종현(기독교연합봉사회)
이주형(오정성화교회)
이준성(역촌교회)
이준우(강남대사회복지학과)
이철호(강성교회)
이치우(합동)
이태훈(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이학영(한국YMCA)
임석영(고덕중앙교회)
임영섭(수원은혜교회)
장빈(동광교회)
장경덕(가나안교회)
장덕만(동암교회)
장덕순(이리신광교회)
장봉생(서대문교회)
장영일(범어교회)
장윤제(한국복지목회협의회장)
장희열(순복음부평교회)
전광표(구세군대한본영)
전병금(강남교회)
전삼광(인천내동교회)
전성원(한기총공동회장)
전숙희(한국민족문화교육원)
전윤원(석천광명교회)
전현표(상동사랑교회)
정권(예가원)
정근두(울산교회)
정근모(한국전력공사 고문)
정덕훈(영광교회)
정명철(도림교회)

(혜성교회)
정무성(숭실대사회복지학과)
정승룡(늘사랑교회)
정신천(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연철(양산삼양교회)
정영교(산본양문교회)
정영환(기독교IPTV)
정우겸(완도성광교회)
정우담(예성총회사회복지부)
정주채(향상교회)
정철옥(아름다운교회)
정필도(수영로교회)
정현구(서울영동교회)
조경열(아현교회)
조남선(베푸는공동체)
조석인(사랑과행복나눔재단)
조성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원근(아현교회)
조이철(기성사회복협의회)
조재호(고척교회)
조한권(전하리교회)
조흥식(서울대사회복지학과)
주경선(밀알의집)
주현신(과천교회)
지관해(서울복음교회)
지성업(대전산성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차정규(신양교회)
채영남(본향교회)
채이석(비전교회)
최길학(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최대석(일산소망교회)
최병국(총회세계선교회복지위원장)
최부옥(양무리교회)
최성재(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최완규(영천감리교회)
최용준(보성읍교회)
최일도(다일복지재단)
최임곤(신일교회)
최종천(분당중앙교회)
최충하(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무)
최한주(푸른숲교회)
최홍규(가리봉교회)
추연호(은파교회)
하금석(예랑교회연안선교회)
하상훈(생명의전화)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한준석(세종제일교회)
한진환(서문교회)
허태성(강변교회)
현해춘(등마루교회)
홍문수(신반포교회)
홍항표(경목총회사무총장)
황문찬(세검정교회)
황선엽(구세군대한본영)
황영일(기독교IPTV)
황우여(한나라당)
(* 순)

2. 이사 명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삼환(명성교회)
민경자(전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손인웅(덕수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김경원(서현교회)
김성이(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최이우(종교교회)
(*가나다 순)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종생(온양제일교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오정호(새로남교회)
이규학(인천제일감리교회)
최희범(한국교회봉사단)

3. 명부

문	감경철, 고 훈, 고용수, 김명규, 김명혁, 김상복, 김장환, 림인식, 박경조, 박래창, 서기행, 손봉호, 신경하, 안영로, 이동원, 이봉관, 이정익, 이종복, 이흥순, 장차남, 전병호, 조용기, 조종남, 최성규, 홍정길		
대표회장	김삼환		
이 사 장	손인웅(기사협) 오정현(WD)		
상임고문	최희범		
공동대표	권태진, 김경원, 김동배, 김양원, 박은조, 박종삼, 박종덕, 박종화, 서재일, 송기성, 양병희, 이성희, 이영훈, 이철신, 조성기, 지형은, 진희근, 최홍준, 피영민		
상임단장	고명진, 김봉준, 소강석, 오정호, 유만석, 정성진, 한태수		
상임이사	정성진		
기획위원	김종생, 김창근, 김한호, 송종완, 우순태, 이상화, 이성구, 이승열, 이효상, 장현승, 주현신, 최명우, 한상업,		
서 기	김종생	부 서 기	
회 계		부 회 계	박홍자
감 사	김광한		
사무총장	천영철		

한국교회봉사단(KOREAN DIAKONIA)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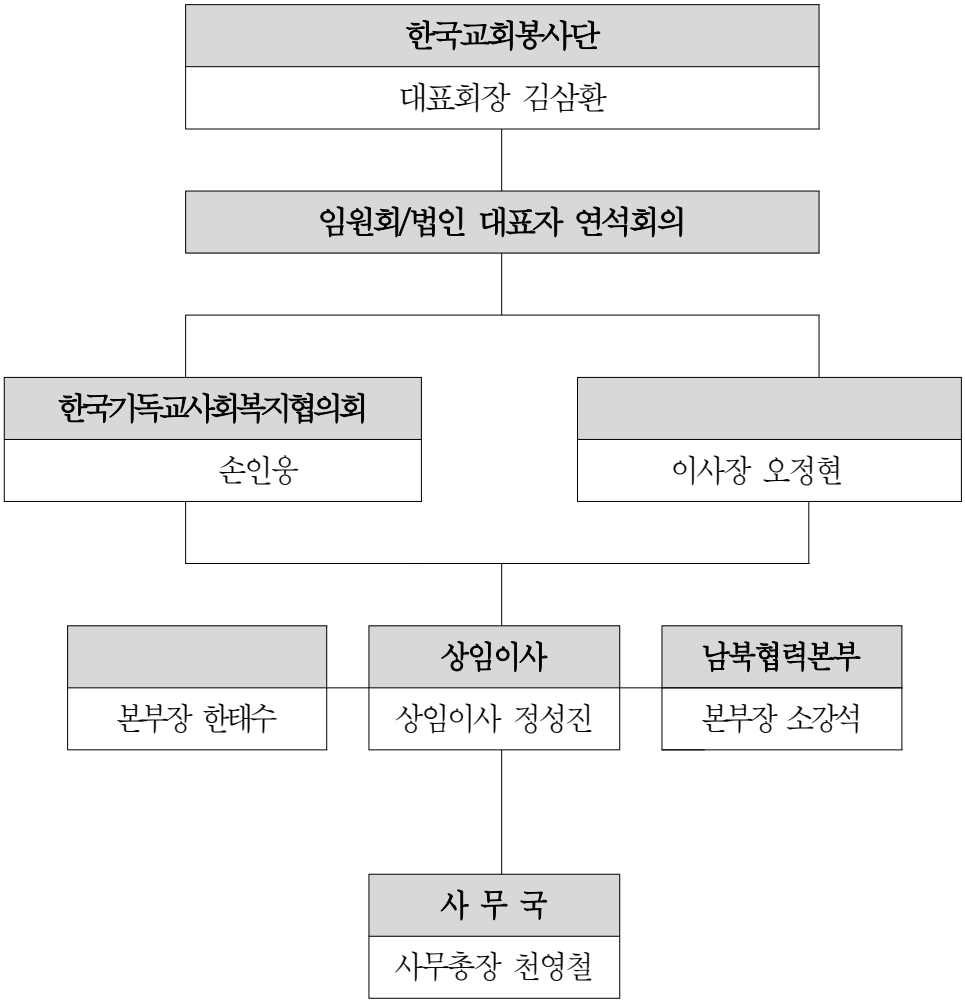

B.

1.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총회 회의록

2015년 2월 6일(금) 11:00-12:10 거룩한빛광성교회 4층 그레이스홀

■ 개회예배

상임이사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로데중창단(거룩한빛광성교회)의 찬양에 이어 묵도 후,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를 제창하다. 상임단장 한태수 목사 기도 후 WD이사장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사도행전 2:42-47)를 제목으로 설교하다. 로데중창단(거룩한빛광성교회)이 '목마른 사슴' 특송에 이어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1절 제창한 후, 기사협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치다.

■ 정기총회

총회시작 전 장효선 집사가 신앙고백 국악공연을 하다.

1. 의장인사
   대표회장 겸 이사 김삼환 목사가 의장인사를 하고 정기총회 시작 기도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상임이사 정성진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44명 중 23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2014년 사업보고
   상임이사 정성진 목사가 2014년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2014년 감사보고
   감사 김광한 장로가 2014년 감사 결과를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2014년 결산보고
   부회계 박홍자 장로가 2014년 결산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상임이사 정성진 목사가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DIAKONIA KOREA(엑스포)는 시간과 장소는 원안대로 받되, 그 외 부분은 조직위원회와 실무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8. 이사회 부의 안건
   2015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의 연임 및 신임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가결하고 취임을 승낙하다.
   ■ 임기만료 이사 : 지형은 조규환 김성이 장경준 김종생 한태수 (2012.05.12.~2015.05.11.)
   가. 연임 이사 : 김성이 김종생 한태수 (2015.05.12.~2018.05.11./3년)
   나. 신임 이사 : 정성진 오정호 유만석 (2015.05.12.~2018.05.11./3년)
   다. 퇴임 이사 : 지형은 조규환 장경준

9. 사무총장 취임
기사협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소개로 사무총장 천영철 목사가 회원들에게 취임인사하다.
10. 기타안건
인천지회 간수웅 목사가 지회 소식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총회자료에 수록할 것을 건의하니, 차기 총회에 반영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11. 폐회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공동대표 김경원 목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12시 10분이었다.

2015년 2월 6일

2. 이사회 회의록

2015-1차 이사회 회의록

2015 2월 6일(금) 9:45-10:58 거룩한빛광성교회

■ 경건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의 사회로 시편23편을 함께 낭독한 후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제창하고, 이사 박종삼 목사의 기도 후 성경 잠언 11:24~25절을 다같이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11명 위임 8명 배석 5명으로 정관 24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손인웅 김경원 김동배 김삼환 김성이 김종생 민경자 박종삼 오정현 최희범 한태수
○ 위임 : 고명진 박은조 이규학 이영훈 장경준 조규환 지형은 최이우
○ 배석 : 정성진(총무) 김광한(감사) 박홍자(감사) 천영철(사무총장) 박승철(사무국장)
2. 전회의록 체택
총무 정성진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결의사항
가. 단체명 변경의 건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변경전	변경후(안)
한글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영문 : KOREAN DIAKONIA	한글 : 한국교회봉사단 영문 : KOREAN DIAKONIA

나. 신규법인을 아래와 같이 설립하여 조직하기로 가결하다.
(1) 한국교회봉사단 / (종무)사단법인

– : 서울특별시

– 주요사업 : DIAKONIA 영역의 교계연합사업

(2) NORTH KOREA DIAKONIA / 사단법인

– 주무관청 : 통일부

– 주요사업 : 북한주민 지원

다. '한국교회봉사단'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되, 임원 전원을 신설 사단법인 한국교회봉사단의 이사로 위촉하기로 가결하다.

고 문	감경철, 고 훈, 고용수, 김명규, 김명혁, 김상복, 김장환, 림인식, 박경조, 박래창, 서기행, 손봉호, 신경하, 안영로, 이동원, 이봉관, 이정익, 이종복, 이홍순, 장차남, 전병호, 조용기, 조종남, 최성규, 홍정길		
대표회장	김삼환(KD 이사장)		
이 사 장	손인웅(기사협) 오정현(WD) 장종현(NKD)		
상임고문	최희범		
공동대표	권태진, 김경원, 김동배, 김양원, 박은조, 박종삼, 박종덕, 박종화, 서재일, 송기성, 양병희, 이성희, 이영훈, 이철신, 조성기, 지형은, 진희근, 최홍준, 피영민		
상임단장	고명진, 김봉준, 서정오, 소강석, 오정호, 유만석, 이윤재, 정성진, 최이우, 한태수		
상임이사	정성진		
기획위원	김종생, 김창근, 김한호, 송종완, 우순태, 이상화, 이성구, 이승열, 이효상, 장현승, 최명우, 한상업,		
서 기	김종생	부 서 기	박순영
회 계	이창연	부 회 계	박홍자
감 사	김광한, 임성이		
사무총장	천영철		

임원회(총 19명) = KD이사 19명

라. 주무관청이 다른 4개 법인(신설 포함)의 기구적 통일성 유지를 위해 임원 19명이 법인의 이사직을 각 법인 별 80% 선에서 겸직하기로 가결하다.

마. 위 결의된 가. 나. 다. 라. 항에 의거해 기존 법인의 정관개정을 허락하되, 실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바. 이사회 결의(2014년 2월 21일)에 따라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손인웅 이사장, 오정현 이사장이 선임한 사무총장 서리 천영철 목사의 사무총장 취임을 허락하다.

사. 2015 총회 보고사항을 정성진 총무와 김광한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아. 2015년 임기만료 이사 선임은 손인웅 이사장과 김삼환 이사와 오정현 이사에게 위임하여 <결의사항 나.>에 의거하여 정하기로 가결하다.

자. DIAKONIA KOREA(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고, 계획과 실행 및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일시 : 2016년 10월 15일(토) ~ 21일(금)

– 장소 : 사랑의교회

차. 도서출판 KD(가칭) 설립을 실무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4. 폐회

김성이 이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전 10시 58분이었다.

2015년 2월 6일

2015-2차 이사회 회의록

2015　10월 16일(금) 12:33-14:08 잠실롯데호텔 3층 펄룸

■ 경건회

이사 오정현 목사의 인도로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한 후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를 제창하고, 이사 유만석 목사의 기도 후, 이사장 손인웅 목사가 빌립보서 2장 5절~11절 봉독,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 이사회

1. 회원점명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8명 위임2명, 불참9명 배석 4명으로 정관 24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고명진 김삼환 손인웅 오정현 유만석 정성진 최희범 한태수 (*가나다순)
○ 배석 : 이윤재 천영철(사무총장) 박승철(사무국장) 전혜선(사업국장)
○ 위임 : 김종생 최이우
○ 불참 : 김경원 김동배 김성이 민경자 박은조 박종삼 오정호 이규학 이영훈

2. 보고사항

1) 2016년 디아코니아 엑스포 준비경과를 보고하다.
2) 통일부 사단법인 노스코리아 디아코니아 설립진행을 보고하다.
3) 국내사업을 보고하다.
4) 해외사업(네팔, 아이티)을 보고하다.

3. 안건토의

1)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보유한 북한지정후원금 107,826,561원 양도의 건은 노스코리아 디아코니아 법인설립 후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2)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11억원 예산조달을 위해 이사들을 중심으로 계속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3)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2016년 총회와 함께 사랑의교회에서 2월 중 갖기로 하고, 그 세부 일정을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와 실무에게 맡겨 정하기로 가결하다.
4)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사랑의교회 내에 개설하기로 가결하다
5) 해외 재난발생 긴급구호 지침(안)은 세부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6) '사랑의 섬김(디아코니아) 현장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사업개발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이사회비 신규 책정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8) 아이티 기술학교(Korean-Haiti Professional School) 개교 기념식에 주요 임원 및 이사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 및 준비를 이사 한태수 목사, 이사 고명진 목사와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9) 2016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 폐회

이사 정성진 목사의 식사기도 후, 이사 최희범 목사의 마침기도로 폐회하니 같은 날 14시 08분이었다.

C. 2015 사업보고

1. 새터민(탈북자)과 함께 새해, 새 희망을

가. 일 시 : 2015. 1. 21 11시
나. 주 관 : 인천 북한봉사회(회장/김명완 목사)
다. 내 용 : "새터민(탈북자)과 함께 새해, 새 희망을 " 메세지와 사랑의 생필품꾸러기 70개를 새해선물로 전달
라. 참 석 : 인천평화교회(김인숙 목사) 새터민 50명과 인천중앙교회 성도30명
마. 지 원 금 : 인천중앙교회(북한봉사회 김명완 회장) 성금 300만원

2. 2015 사랑 잔치

. 서울 동자동 주민
1) 일 시 : 2015년 2월 18일(수) 14:00~17:00
2) 장 소 : 성민교회
3) 대 상 : 동자동 주민 500세대
4) 내 용 : 명절음식 방문 전달
5) 자원봉사 : 30명 (덕수교회 15명, 은평성결교회 15명)

나. 엔젤만신드롬(희귀난치성질병) 환우가족 온천여행
1) 일 시 : 2015년 1월 25일(일)~26일(월)
2) 대 상 : 환우 6가정, 30명
3) 장 소 : 수안보파크호텔
4) 내 용 : 엔젤만 증후군 환우와 환우보살핌에 지친 가족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 제공
5) 자원봉사 : 유니게의집(다문화 싱글맘)

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 대 상 : 유가족 및 유가족들을 섬기는 안산 및 인천지역 도우미
2) 내 용 : 편지와 명절 선물 전달

라. 의정부 화재참사 이재민
1) 대 상 : 군부대 피신 중인 피해자 40여명
2) 내 용 : 편지와 명절 선물 전달

3.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 일 시 : 2015년 3월 28일(토) 오전11시
나. 장 소 : 간석감리교회
다. 주 관 : 인천교회봉사단(대표회장/이종복 감독 주재)
다. 내 용 : 간석동과 만수동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마. 참 석 : 윤관석 국회위원 및 주민 200여명

. 후　　원 : SK 온누리상품권 500만원

4. <2015　　기쁨을 이웃과 함께> 캠페인

가. 일　　시 : 2015년 4월 5일(부활주일)

나. 대　　상 : 전국 쪽방촌 주민과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4천여 세대

다. 내　　용 :

1) 서울 동자동 주민
   - 대　　상 : 1천여세대 (달걀 10개 1세트씩 전달)
   - 자원봉사 : 은평성결교회(한태수 목사 시무)와 성민교회(이성재 목사 시무)
   - 내　　용 : 건물주의 퇴거 통보로 주거지를 잃게 된 지역주민 42세대를 위한 기도 및 특별심방

2) 서울 돈의동 주민
   - 대　　상 : 780세대 (달걀 10개 1세트씩 전달)
   - 자원봉사 :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
   - 내　　용 :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심방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

3) 서울 창신동 주민
   - 대　　상 : 350세대 (달걀 10개 1세트씩 전달)
   - 자원봉사 :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 시무)와 등대교회(김양옥 목사 시무)

4) 부산 동구 쪽방지역 350세대

5) 인천동산비전센터 다문화가정 80여세대

6)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자 1천2백여명

5. 세월호 희생자 가족 돌봄 및 네트워크 사업

가. 직원 현장 파견

1) 기　　간 :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2년)

2) 업　　무 : 안산지역 희생자 가족 돌보미로 형제자매 및 생존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학습 및 취미 여가활동지원, 지역필요에 따른 기타 업무수행

나. 1주기 한국교회 추모예배

1) 일　　시 : 2015. 4. 15(수) 오후3시

2) 장　　소 : 진도 팽목항

3) 공동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진도군교회연합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교회초교파협의회

4) 후　　원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5) 내　　용 : 1천명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 공동대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에서 밥차 제공

다. 세월호 가족과 교회여성 간담회

1) 일　　시 : 11. 17(화)

2)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　　관 : 세월호 아픔에 함께하는 기독여성연대

4) 용 : '아직 끝나지 않은 눈물, 기억, 엄마들의 이야기'로 공감 위로의 자리

라. 세월호 희생자가족 가을캠프 지원

1) 일 시 : 11. 28(토) 오전 10시~ 오후 9시

2) 장 소 : 포천 산사원 / 포천허브아일랜드

3) 내 용 : 세월호 희생자 가족 나들이 (총17명 참석)

6. 2016 코리아 기획단 및 교수협력단 연석회의

가. 위원위촉

1) 기 획 단 : 김동배 김종생 김창곤 김한호 송종완 우순태 이상화 이성구 이성철 이승열 이효상 장현승 정무성 정병화 주현신 최명우 한상업

2) 교수협력단 : 김동배 김성철 김기원 김범수 노충래 오정수 유수현 이만식 전광현 정무성 조흥식 현외성 (*가나다순)

나. 회의

-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15:00 / 3월 30일(월) 15:00
- 장 소 :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8층 접견실

7. 엔젤만증후군 환우 돌봄사업

가. 어린이 영양제 지원

1) 일 시 : 5월 5일(어린이날)

2) 대 상 : 환우 64가정

나. 가족 캠프 지원

1) 일 시 : 5월 30일(토) ~ 5월 31일(주일) / 1박2일

2) 장 소 : 한화리조트(설악 쏘라노)

3) 후 원 : 도시락

8. 서해안 원유유출 자원봉사 기념비 보수

가. 내 용 : 서해안 원유유출 4주기에 제작한 한국교회 자원봉사 기념비의 보수

나. 장 소 : 파도교회, 의항교회, 만리포교회, 천리포교회, 학암포교회, 신두리교회

9. 자원봉사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00인 원탁토론회 공동주최

가.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14:00~17:00

나.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

다. 대 상 : 200여명(부문별·연령별 자원봉사 단체, 센터, 관련기관 관계자 등)

라. 주요내용 : 한국자원봉사의 10대 과제 및 2016년 중점과제 선정

마.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바. 공동주최 : (사)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

, 원불교중앙봉공회,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 후 원 : 행정자치부, JTBC, 중앙일보

10. 2015 자원봉사리더 양성교육 직원 수료

가. 일 시 : 8월 4일~6일(인천), 8월 24일~26일(서울)

나. 주 관 : 대한적십자사

다. 참 석 자 : 한교봉 직원 4인 참석 및 수료

라. 교육내용 :

분	1일차	2일차	3일차
09:00	교육등록	출석확인	출석확인
10:00	재난현장구호활동체계 (2H)	재난과 PSS (2H)	특수차량의 이해 및 구호급식 운영 실습(3H)
11:00			
12:00	중식	중식	
13:00	재난과 자원봉사활동 (4H)	CPR 강습 (4H)	집단구호 및 구호물품 관리 (3H)
14:00			
15:00			
16:00			수료식
17:00	교육 정리 및 종료	교육 정리 및 종료	

11. 자원봉사 10대과제 선정을 위한 200인 원탁토론회 공동주관

가.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14:00-17:00

나.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다. 대 상 : 부문별, 연령별 자원봉사단체, 센터, 관련기관 관계자 200여명

라. 내 용 : 2016년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자원봉사의 10대 과제 선정

마. 방 식 : 타운홀 미팅

바.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 주 관 : (사)대한노인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원불교봉공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사)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아. 후 원 : 행정자치부 JTBC 중앙일보

12. 제8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세션 주관

가. 주 제 : "자원봉사, 기본으로 돌아가자"
- Get back to the basic -

나. 일 자 : 2015년 8월 27일(목)~28일(금), 1박 2일

다. 장 소 : 켄싱턴 리조트(충북 충주시)

라. 대 상 : 500여명(자원봉사단체장·센터장 및 자원봉사 관리자, 관련공무원, 기업 및 교수등)

마. 주 최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바. 세션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각당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문화,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CSR포럼, 대한노인회,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학회, 원불교중앙봉공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교회봉사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 후 원 : 행정자치부

13.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활동

※ 한국교회봉사단은 위 연대회의 운영위원 단체임

가. 광복 70년, 원폭 70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토론회

- 일 시 : 2015년 6월 1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내 용 :

사회 / 전갑생(「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2013년 합천」 공저)

발제 /

1) '원폭과 인권, 그리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2)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원폭피해자가 말하는 원폭피해자 특별법' 성락구((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 주 최 : 국회의원 김성주, 이명수
- 주 관 :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나. 원폭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
- 참 석 자 : 원폭피해자 1세 40명, 원폭 2세환우 30명, 시민단체 20명
- 주 관 :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 논평문 발표

고통을 치유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판결 논평문

오늘 9월 8일 일본최고재판소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홍현 전 대구경북지부장 등 2인이 재외피폭자에게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그동안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제외피폭자라는 이유로 당시 일본국민과 같이 피폭을 당하고도 일본정부로부터 의료비지원, 건강검진 등에서 자국민과 차등 지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또한 1년 의료비 한도로 인해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 일본최고재판소 확정판결로 앞으로 한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모든 재외국민피폭자들이 일본 자국민 피폭자들과 동등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본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계기로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은 사실을 각성하고, 원폭피해자 1세와 그 후손들의 현황 파악과 건강, 생활 등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19대 국회는 원폭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 지원과 교육, 추모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폭피해자 및 그 자손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원폭투하 70주년 2015년 9월 8일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

14. 사랑의 선물 나누기

가. 기 간 : 2015년 9월 20일-27일

나. 목 적 : 한국교회가 2015년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사랑의 선물을 전달함. 이를 통해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의 성숙에 기여함.

다. 대 상

1)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 가정 420가정
메밀베개 / 416가족대책위 방문전달
진 행 : 선물포장 자원봉사 9/22~23,
안산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전달식 : 9월 23일 14시, 416가족대책위사무실

2) 네팔한인선교사 20가정
국물용멸치 / 네팔주재한인선교사협의회
진 행 : 9/14~21 네팔 방문 전달(4차 긴급구호활동)

3) 인천 선학노인정 노인 50여명
떡과 과일 전달 / 연수구자활센터 협력
인천 사회복지봉사회 (회장/간수웅 목사) 주관

15.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누기

가. 세월호 유가족

1)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2) 상 : 단원고 학생 유가족, 실종자 가족, 안산지역 외 거주 유가족, 생존자 가족 등 아픔을 겪은 세월호 피해가족 355가정

3) 내 용 : 목회자와 성도들이 직접 쓴 성탄 손편지와 가죽장갑셋트

4) 방문자 : 손인웅 목사(KD이사장), 최희범 목사(KD상임고문) 등 임직원과 성명옥 목사(여교역자연합회 원로), 김혜숙 목사(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기독여성연대)

나.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1)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2) 대 상 :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쉼터 '늘푸른청소년미래'

3) 내 용 : 방한이불 전달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2)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46명

3) 내 용 : 방문 및 위로, 성탄선물전달

라. 엔젤만 환우

1) 일 시 : 2015년 12월 22일(화)

2) 대 상 : 엔젤만 환우모임 가족

3) 내 용 : 비타민 및 장갑전달

마.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1) 일 시 : 2015년 12월 23일(수)

2) 대 상 : 자치자활조직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임원 및 주민

3) 내 용 : 장갑 및 성탄선물 전달

16. 자원봉사계 위원 및 임원 활동

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자부) 운영위원회 위원(2012-현재)

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2009-현재)

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법정기관) 협동사무총장(2015-2017)

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2015-2018)

마. 2016-18 한국자원봉사의해 실무기획단 위원

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자부) 발간 <4.16 세월호참사 자원봉사활동 기록> 편집위원

사. 한국자원봉사관리자협회 제정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제정위원

아. 행자부, 국민안전처 등 자원봉사/재난재해 관련 민관협력회의 등 정부부처 각종 정책 자문

17. 한국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창립준비활동

- 기독교/ 한국교회봉사단(부설 자원봉사본부)
- 천주교/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부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 불 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부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센터)
- 원불교/ 원불교봉공회

D. 2015 감사보고서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본 감사는 2016년 1월 26일 10시 30분부터 귀 기관의 2015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6. 01. 26.

감사 김 광 한 (인)

감 사 의 견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1. 수입지출금액 검토 (전년도 이월금 포함)

(단위: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
전년도이월금	404,816,637	206,831,878	197,984,759
수 입	334,351,897	678,501,288	-344,149,391
지 출	404,464,080	480,516,529	-76,052,449
잔액(년도이월)	334,704,454	404,816,637	-70,112,183

1) 2014년도의 수입금액 중 세월호사업으로 374,496,901원이 입금된바 있으나 2015년 중에는 이에 대한 수입이 없었음.

2) 2014년 수입된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15년도 지출은 상대적으로 경미함.

3) 관계장부, 영수증철, 은행잔고증명 등을 확인한바 잘 정리되었음.

E. 2015 결산보고서

2015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14년 이월금	산 출 근 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404,816,637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118,930,000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사업후원금	92,530,000	사업후원(설날,부활절,추석행사,성탄절,쉼터지원)
		일반후원금	82,010,788	일반후원금(월드디아코니아,기업은행)
		지정후원금	15,000,000	지정후원금(SK인천지회,유진크레베스북한)
		세월호위로회복후원금	360,000	지정후원금(세월호위로회복후원금)
잡이익	잡이익	이자수입	327,971	예금에대한 이자수입
		잡이익	405,572	원단위 할인 외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51,340	선급법인세 환급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1,717,92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878,306	법인카드사용분 외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140,000	서해안기념비입간판보수(환불금)환입
총 계			334,351,897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지급입차료	38,366,400	사무실 , 복사기 임대관리비
		통신비	1,393,842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외
		제세공과금	12,516,070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외
		운반비	29,500	퀵, 택배 사용료 외
		도서인쇄비	389,650	회보제작, 신문구독료, 도서 구입
		소모품비	716,645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외
		여비교통비	2,684,700	월정/시간주차료, 통행료 외
		지급수수료	8,272,937	CMS 관련 / 회계사기장 / 송금 수수료 외
		차량유지비	3,446,230	주유비, 차량정비비,통행료(고지서납부)
		소 계	67,815,974	
	업무비	업무추진비	521,670	업무 관계자 미팅시 식사 및 다과비
		회의비	939,350	임원회의 및 각종 회의비
		소 계	1,461,020	
	인건비	급여	118,813,080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9,558,035	건강보험료, 손님식대 외
		잡비	184,000	교통범칙금, 과태료 외
		교육훈련비	20,000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외
		소 계	128,575,115	
	합 계		197,852,109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업비	구호사업비	국내구호(서해안)	875,800	서해안기념비입간판보수
		소 계	875,800	
	기획사업비	설날사랑큰잔치	7,799,730	설날사랑큰잔치 행사 진행경비
		정대협사업지원	18,406,500	정대협 사업지원 비용
		원폭및방사능누출피해자지원사업	807,500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 진행경비
		다문화.이주민지원	200,000	다문화행사 진행경비
		연변탈북자자녀돕기	16,200	연변청소년돕기 사업 진행경비
		장애인사업지원	2,025,680	엔젤만증후군가족모임지원
		부활절사업	3,253,020	부활절 행사 진행경비
		거리의성탄절	4,710,820	거리의성탄절 행사 진행경비
		세월호참사위로회복	58,821,250	세월호참사위로회복 진행경비
		소 계	96,040,700	
	기타사업	사업추진비	73,000	사업관련 업무추진 비용
		행사비	1,155,880	2014총회 진행경비
		홍보사업	3,787,739	영문홈페이지제작,후원사역보고, 회보발송 비용
		기타사업	3,020,000	유관기관 행사후원금 및 연회비(한봉협) 외
		사업운영관리비	51,606,540	사업운영관리
		사업개발비	16,974,839	사업개발
		소 계	76,617,998	
	조직사업비	분야별사업단조직	300,000	분야별사업단 조직 준비비
		영역별협의체조직	300,000	영역별협의체 조직 준비비
		지회강화및설립	5,300,000	지회강화 및 설립 준비비
		네트워크강화	1,951,920	네트워크강화 및 준비비 및 유관기관 강화비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463,900	자원봉사 네트워크강화 경비 외
		소 계	8,315,820	
	합 계		**181,850,318**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선납세금	36,90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36,900	
	합 계		**36,900**	
잡손실	잡손실	잡손실	498,652	원단위절사 외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1,314,795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911,306	법인카드사용분(전월) 외
총 계			**404,464,080**	

2015년 결 산	이 월 금	404,816,637
	총 수 입	334,351,897
	총 지 출	404,464,080
	잔 액	334,704,454
지정기금	기본자산	33,620,000
	퇴직연금적립	17,198,812
	북한재해구호	117,826,561
	엔젤만캠프지정	18,000,000
	세월호위로회복	131,811,107
	캠페인사업지정	10,000,000
총 잔 액		6,247,974

F. 2016 사업계획

I.

1. 함께하는 설날사랑잔치

.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사랑 잔치

1) 일 시 : 2016년 2월 10일(수) 9:30~14:30
2) 장 소 : 성민교회
3) 대 상 : 동자동 주민
4) 내 용 : 명절음식만들기,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기, 방문하여 명절음식 나누기, 문화공연(국악, 기타연주), 명절선물나누기
5) 주 관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민교회, 은평성결교회, KD한국교회봉사단

나. 한국원폭피해자2세 온천여행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화)~17일(수) 1박2일
2) 장 소 : 수안보파크호텔
3) 대 상 :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 20명
4) 주 관 : KD한국교회봉사단
5) 후 원 : 주)환경테크, 한국도자기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방문

1) 일 시 : 2016년 2월 10일(수)
2) 장 소 : 쉼터 평화의 우리집
3) 내 용 : 설날인사 및 명절선물 전달

2. 세월호희생자가족 돌봄 및 네트워크사업

가. 직원 현장파견

1) 기 간 : 2015년 3월~2017년 2월(24개월)
2) 주요업무 : 안산지역 희생자가족 돌보미로 형제자매 및 생존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학습 및 취미 여가활동지원, 지역필요에 따른 기타 업무 수행

나. 돌봄 및 네트워크 사업

1) 기 간 : 2016년 1월 ~ 12월
2) 안산지역 시민단체, 기관들과 연대 및 협력사업 전개

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회복프로그램 지원

1) 행사명 : 지구별여행단
2) 기 간 : 6월~8월 3개월간
3) 대 상 : 희생자가족 중 형제자매(청소년)10명
4) 내 용 : 집단상담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여행을 소재로 나눔과 교제 및 활동, 직접 설계하는 여행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

날짜		세부내용
6월	4일	오리엔테이션 / 여행이야기 워크숍
	11일	여행지 영화/다큐 관람 및 나눔
	18일	'희망을 여행하라'워크숍
	25일	희망을 여행하라 실습
7월	2일	'사진으로 말해봐' 워크숍
	9일	여행 에세이집 워크숍
	16일	'희망을 여행하라'워크숍
	23일	'꿈따라 길따라'여행
8월	6일	'지구별 여행단'워크숍
	12-13일	1박2일 여행

. 가족캠프 지원

1) 일 시 : 2016년 10월 1일

2) 장 소 : 전주한옥마을

3) 대 상 : 희생자가족 20명

3.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지원

가. 어린이종합비타민지원

1) 대 상 : 엔젤만신드롬 환우 70명(연 2회 6개월분)

2) 일 시 : 2016년 어린이날, 성탄절

나. 러브터치 가족캠프

1) 일 시 : 4월 24일(일) ~ 26일(화) 2박3일

2) 장 소 : 제주도 일원

3) 인 원 : 총 40명(가족 35, 가이드1, 인솔1, 봉사자2, 기자1)

4) 내 용 : 엔젤만신드롬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양육과 치료에 심신이 지쳐있는 부모들과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며 치료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4. 절기사업

가. 대 상 : 세월호희생자가족, 쪽방주민, 원폭2세환우,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

나. 내 용 : 설날, 부활절, 추석, 성탄절에 소외된 이웃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고 선물 전달

II.

1. /지역 기관 · 단체와의 협력사업

. 쪽방촌 주민(동자동) 교육지원

1) 대 상 : 동자동 주민

2) 기 간 : 2016년 1년간

3) 내 용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의 신규조합원, 기성조합원, 임원들의 주민교육필요에 의하여 매월 1회 진행

4) 주 관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장 우건일)

나. 일본 위안부피해할머니 쉼터 '우리집' 운영비지원

- 주 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미향, 복지사 손영미)

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운영위원단체 활동

- 내 용 : 운영위원단체로서 입법활동
연대회의 운영비지원
사업진행시 공동주관 및 사업비 지원

2. 한국사회 자원봉사계 연대활동

- 내 용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협동사무총장 활동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활동
2016-18 한국자원봉사의해 추진위원, 집행위원, 기획위원 활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정책연구위원 활동

3. 한국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창립 및 연대활동

가. 창립내용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자원봉사 담당기관 협의회 창립

- 기독교/ 한국교회봉사단(부설 자원봉사본부)
- 천주교/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부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 불 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부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센터)
- 원불교/ 원불교봉공회

나. 대한적십자사-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재난대응을 위한 협약서> 체결

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업무협약서> 체결

라. 4대종단 재난대응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4. 자원봉사본부 및 자원봉사대 설립 및 사업전개

가. 설립취지 : 2008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방제작업에 17만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한국교회의 경험과 잠재력을 되살려, 한국교회가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 협의/정책기구로서 자원봉사본부와 실행기구로서 자원봉사대를 설립하고자 함

. 설립근거 : 법인정관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다. 내 용

1) 자원봉사본부

○ 성격 : 각 지역 및 교회별로 설립되는 자원봉사대의 중앙 대표 협의기구
각 자원봉사대 사업과 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책/지원기구

○ 역할 : 자원봉사 영역에서 한국교회의 대정부-대사회 창구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정책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교회 자원봉사대 사업내용 및 자원봉사자 DB 구축, 관리
- 행정자치부 자원봉사관리 시스템(1365)과 연계
한국교회의 사회공헌, 지역사회 기여 촉진 및 관련 홍보

○ 조직 : 자원봉사본부장 1인 / 대표회장이 임명한 상임단장급 임원
공동본부장 약간명 / 자원봉사대가 설립된 교회의 담임목사
본부장단 회의 / 본부장+공동본부장 협의기구
부본부장 약간명 / 자원봉사본부장이 임명한 임원
실무위원회 / 공동본부장이 임명한 각 교회 자원봉사대 대장 및 임원
사무총장 1인 / 한교봉 사무총장 겸임
사무국장 1인 / 한교봉 담당국장 겸임
간사 2인 / 한교봉 간사 겸임 1인

○ 사업 : 각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근거 자원봉사센터협회 업무협약)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현장 발굴 및 섬김과 나눔 인프라 지원
UN이 2015년 9월 결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반영한 빈곤과 기아종식, 불평등 완화, 사회발전, 환경, 거버넌스, 글로벌 파트너쉽 등과 연계된 한국교회 자원봉사정책인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를 위한 아젠다' 개발

2) 자원봉사대

○ 성격 : 각 지역 및 교회별로 설립되는 자원봉사대 / OO교회 자원봉사대
(중앙)자원봉사본부의 하부조직이 아닌 사업/예산이 독립된 별개 조직

○ 역할 : 지역사회와 연계된 섬김과 나눔, 이웃과의 연대사업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긴급 자원봉사 역량 구비
SDGS를 반영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추진

○ 조직 : (공동)본부장 1인 / 자원봉사대가 설립된 교회의 담임목사
자원봉사대장 1명 / (공동)본부장이 임명한 자원봉사대 대표
총무 1인 / (공동)본부장이 임명한 자원봉사대 실무책임자
서기 1인 / (중앙)자원봉사본부와 연계해 DB 축적 등을 담당할 임원
회계 등 임원 약간명 / 자원봉사대 사업추진을 위해 임명된 임원
대원 / 실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변혁과 혁신을 주도할 성도

○ 사업 : 각 지역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현장 발굴 및 섬김과 나눔
SDGS를 반영한 '한국교회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를 위한 아젠다'의 지역사회 전개
2016년은 임원교회 중심으로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와 연계해 자원봉사대 순차

, 2017년은 전체 회원교회로 확대

5. 설립 및 사업전개

가. 설립취지 :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공조를 통해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함

나. 설립근거 : 법인정관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다. 내 용

○ 성격 :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사업 전개

○ 역할 :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인도적 지원사업 전개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대북 협력사업 전개

○ 조직 : 남북협력본부장 1인 / 대표회장이 임명한 상임단장 급 임원
공동본부장 약간명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임원 및 회원
사무총장 1인 / 한교봉 사무총장 겸임
사무국장 1인 / 한교봉 담당국장 겸임
간사 1인 / 한교봉 간사 겸임

○ 사업 :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추진
WFP 협력 NGO 등재 추진
언론사와 공동으로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캠페인 전개
비평양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식 공급사업 전개

III. 2016 코리아(엑스포)

1. 및 목적

'2005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와 '2010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에 이어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개최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과 나눔의 총량을 가늠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및 시민사회와 중앙 지방정부 등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대사회적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추진 경과

가. 하이델베르그 디아코니아연구소(Diakoniewissenschaftliches Institut), 하이델베르그 도시선교회(Stadtmission), 슈트트가르트 기독교사회봉사국(Diakonisches Werk der Wuerttemberg Landeskirche in Stttgart), 독일교회 기독교사회봉사국(Diakonsches We가 der EKD e.v. in Berlin) 등 독일 독일 디아코니아 기구 벤치마킹

나. 2013 Kirchandtag(München), 2015 Kirchandtag(Stuttgart) 참가
- 독일교회의 사회적 책임감당 현장 벤치마킹

다. Social Enterprise, Living Library, The cooperative enterprise hub(이상 London) 등 방문 -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단체, 협동조합, 시민사회 지원기관 등의 현장 벤치마킹

라.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디아코니아 코리아 자문회의(2013. 6. 13)

마.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기획단 및 교수협력단 연석회의(2015. 3. 16)

바.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사업계획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고 5억원 교부 결정(기획재정부, 국회, 2015. 12)

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교수협력단 회의(2016. 3. 4)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나. 사업기간 및 장소

(1) 본대회 : 2016년 10월 15일(토) - 20일(목) / 시청광장, 서울시청 별관
전야제, 개막식, 전시, 해외 컨퍼런스 및 영역별 세미나, 음악회 등

(2) 사전대회
- 조직위원회 출범식 : 2016년 3월 23일 / 사랑의교회
- 디아코니아 음악회 : 2016년 5월, 7월 / 서울
- 지역대회 겸 자원봉사대 발대식 : 2016년 9월 / 인천 대전 강원 영남 호남

다. 주 최 :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

라. 주 관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4. 사업내용

가. 본대회 1-전야제 및 개막식 / 10. 15-16

(1) 청년걷기대회 / 15일(토) 13:30-15:30 서울시 일원 및 시청광장

(2) CCM 페스티벌 / 15일(토) 16:00-18:00 시청광장(이하 동일)

(3) 개막예배 및 성례전 / 16일(주일) 16:00-17:00

(4) / 16일(주일) 17:00-18:00

나. 본대회 2-컨퍼런스 및 세미나 / 10. 17-20

(1) 컨퍼런스 1(디아코니아) / 17일(월) 09:30-12:00 사랑의교회(이하 동일)

(2) 영역별 세미나 1(지역사회 개발) / 17일(월) 13:30-15:30

(3) 컨퍼런스 2(국제 디아코니아) / 17일(월) 16:00-18:30

- 디아코니아 초청 만찬 / 19:00-20:00

(4) 영역별세미나 2(보건 의료) / 18일(화) 09:30-12: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이하 동일)

(5) 영역별세미나 3(소외계층) / 18일(화) 13:30-15:30

(6) 영역별세미나 4(다문화) / 18일(화) 16:00-18:00

(7) 컨퍼런스 3(자원봉사) / 19일(수) 09:30-12:00

- 자원봉사본부 출범식

(8) 영역별세미나 5(노인) / 19일(수) 13:30-15:30

(9) 영역별세미나 6(아동 청소년) / 19일(수) 16:00-18:00

(10) 컨퍼런스 4(북한 인도적 지원) / 20일(목) 09:30-12:00

- 남북협력본부 출범식

(11) 영역별세미나 7(장애인) / 20일(목) 13:30-15:30

(12) 영역별세미나 8(가정 여성) 20일(목) 16:00-18:00

다. 본대회 3-엑스포 전시 100개 부스 운영 / 10. 18-20 서울시청 광장

- 컨퍼런스 및 영영별세미나 주제와 연계해 참여 기관단체 선정

라. 본대회 4-폐막식, 디아코니아 음악회 / 10. 20 서울시청 광장

마. 사전대회

(1) 조직위원회 출범식 : 2016년 3월 23일 / 사랑의교회

(2) 디아코니아 음악회 : 2016년 5월, 7월 / 서울지역(장소 협의중)

(3) 지역대회, 자원봉사대 발대식 : 2016년 9월 / 인천 대전 강원 영남 호남(협의중)

5. 2016 코리아 조직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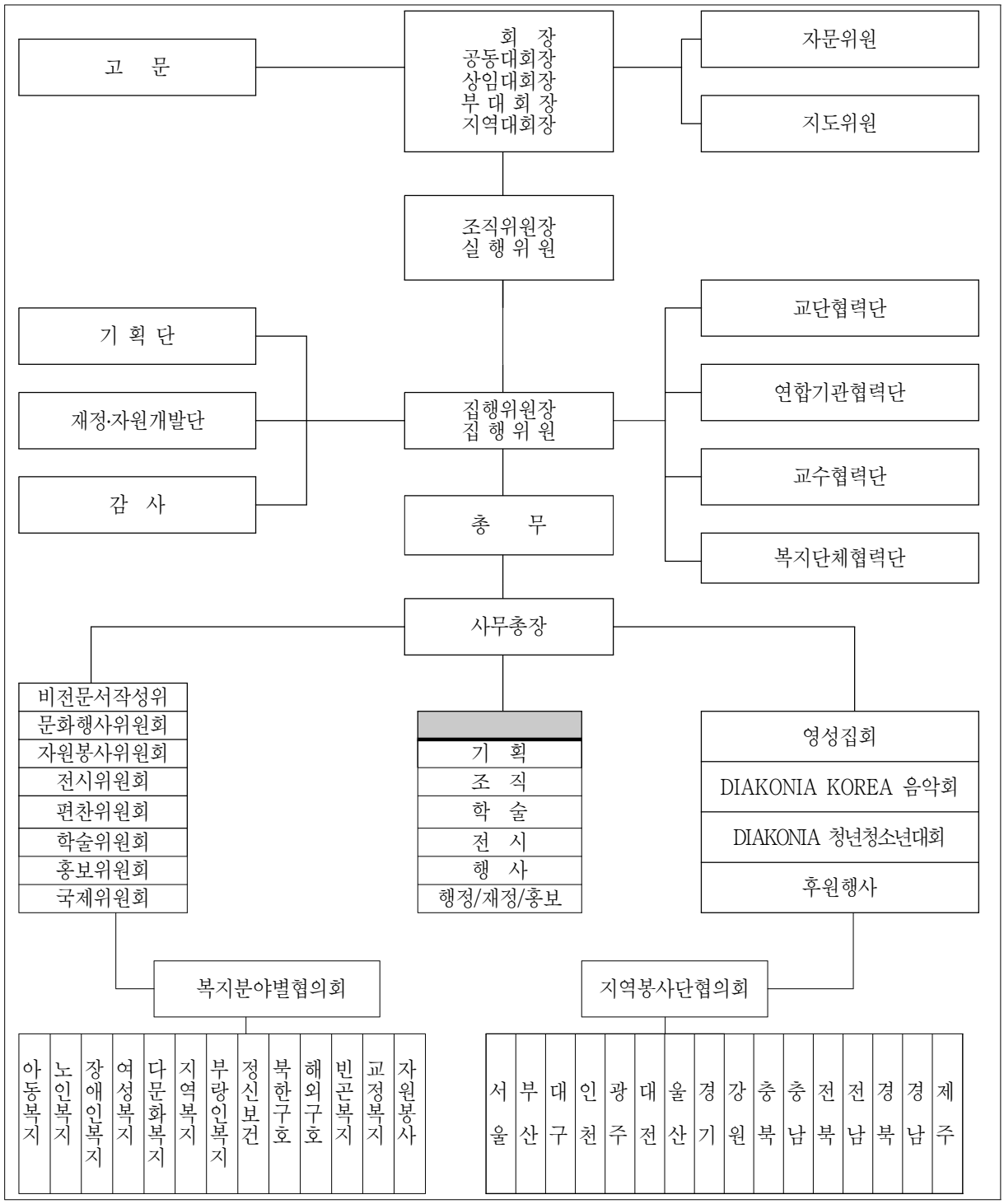

6.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조직위원

		성명
고 문		곽선희 김동권 김명혁 김선도 김순권 김창인 림인식 박경조 박종순 서기행 신경하 안영로 이광선 이종복 이종윤 장차남 조용기
지도위원		고 훈 김상복 김성이 김승규 김영헌 김인환 두상달 서재일 박종화 양병희 원팔연 윤석전 윤종관 이경숙 이봉관 이수영 이승영 이용남 이용호 이정익 전병금 정철범 주남석 최건호 최성규 최희범 황수원 황용대
자문위원	언론	한용길 감경철 한기붕 최삼규 김명규
	단체	박천일 김노보 서정인 진중섭 양호승 이일하 김득린 장석준 류시문 최학래 최일도 이충재 이명혜
	학계	전혜정 김용학 최갑종 최경희 한헌수 유석성 김명용 노영상 채수일 박종천
대표대회장		김삼환
공동대회장	교단장회의	채영남 박무용 전용재 장종현 유동선 최부옥 신상현
	단체	조일래 백남선 장 상 이상대 이동춘 김경원
	한교봉	박은조 박종삼 송기성 이성희 조성기 지형은 진희근 최홍준 피영민
상임대회장		손인웅 오정현
부대회장		고명진 김봉준 소강석 오정호 유만석 정성진 한태수
지역대회장		권영규 오정호 김한호 조택현 최영태
조직위원장		오정현
집행위원장		권태진
총 무		정성진
기획단		김한호 우순태 이상화 이성철 이효상 정병화
교단협력단		이승열 안승주 선철규 박종환 정경환 정재우 이길수 김규환 김세중
연합기관협력단		우순태 이상화 이효상 김명일 김춘규 이병대 박정수 정균양
교수협력단		김동배 송정부 전광현 김기원 김형태 김범수 노충래 이만식 손 신 김성철 박용순 고기숙 조흥식 양혜원 임원선 이근홍 최소연 오세란 이준우 송인한 조성상
복지단체협력단		김양원 최갑성 최주환 이기복 전병노 손원재 김해성 박천응 안기성
재정자원개발단		두상달 이봉관
감 사		김광한
서 기		김종생
부서기		
회 계		
부회계		박홍자
사무총장		천영철

G. 2016 예산(안)

Korean Diakonia 2016 예산(안)

(2016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수입부 (: 천원)

관	구 분	2015년 결산금액	2016년 예산금액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기본자산제외)	371,196	301,084
회비	회 비	118,930	130,000
후원금	사업후원금	189,900	200,000
잡수입	잡수입	733	800
총 계		680,759	631,884

■ 지출부 (단위 : 천원)

관	구 분	2016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77,000
	인건비	138,884
	소 계	215,884
사업비	기획사업비	306,000
	구호사업비	37,000
	조직사업비	55,000
	기타사업비	18,000
	소 계	416,000
	총 계	631,884

2016 DIAKONIA KOREA (안)

수입부

(단위 : 천원)

관	구 분	국고지원	조직위자부담
디아코니아 코리아지원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	500,000	1,093,000
	소 계	500,000	1,093,000
총 계			1,593,000

■ 지출부

(단위 : 천원)

관	구 분	국고지원	조직위자부담
디아코니아 코리아사업	1. 디아코니아 코리아 전시관 설치	293,410	165,000
	2. 디아코니아 코리아 개막행사	35,200	25,000
	3. 디아코니아 문화공연	101,040	15,000
	4. 나눔과 섬김 전국순회 세미나	0	62,000
	5. 민간주도 사회안전시스템 국제컨퍼런스	70,350	110,000
	6. 디아코니아 코리아 지역대회		153,000
	7. 디아코니아 코리아 영역별 대회		228,000
	8. 섬김과 나눔 시민교육교재 개발/보급		76,000
	9. 인간존중 캠페인 – 시민 걷기대회		52,000
	10. 디아코니아 코리아 백서 발간/보급		97,000
	11. 인간존중을 위한 시민 캠페인		110,000
	소 계	500,000	1,093,000
총 계			1,593,000

※ 자부담 중 50%는 월드디아코니아가 부담

H. 정관 변경 대조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개정(안)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 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Diakonia'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대전지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7번지 정립종합사회복지관 내 3. 부산 경남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697-2 반송종합사회복지관내 4. 대구 경북지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 내 5. 광주 전남지회: 광주시 오치2동 1003번지 오치사회종합복지관내 6. 인천지회: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9-6 7. 경기남지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0-10 8. 충북지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9.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번지 10. 울산지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346번지 11. 경기서지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 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 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 외 및 북한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공공기관, 단체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단회원: 기독교 각 교단 2) 단체회원: 교회 및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3) 지역협의회원: 전국 시도별 지역협의회 4)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기독교 각 교단 및 교회,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2)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9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감사 2인 5.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9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기구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을 겸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주관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기구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②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이사회가 선임한 실행위원으로 한다. ②회원은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

한다.	라야 한다.
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기구를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별지1** (삭제)

I. 한 정관

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대전지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7번지 정립종합사회복지관 내
3. 부산 경남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697-2 반송종합사회복지관내
4. 대구 경북지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 내
5. 광주 전남지회: 광주시 오치2동 1003번지 오치사회종합복지관내
6. 인천지회: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9-6
7. 경기남지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0-10
8. 충북지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9.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번지
10. 울산지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346번지
11. 경기서지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단회원: 기독교 각 교단

2) 단체회원: 교회 및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3) 지역협의회원: 전국 시도별 지역협의회

4)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9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사업단을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②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6-2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6-3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별지1

본 재 산 목 록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기본재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 물	43평	25,800,000	한국기독교사회 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 지		-		
		출연금		33,620,000	한국기독교사회 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 계		59,420,000		

chosun.com 사회

사회 일반

[Why] 태극기 휘날리는 아이티... 잿빛 콘크리트에 희망 심다

카라콜(아이티)=김수경 기자

입력 : 2016.03.19 03:00 | 수정 : 2016.03.20 09:46

지진 후 처음 생긴 직업학교

한 학기 등록금 700원
졸업 후 공단 관리직 취업... 일반 근로자 임금의 두 배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희망을 보고 일어난다"

아이티 직업학교의 첫 신입생들이 학교 건물 준공을 반기며 활짝 웃고 있다. 학생들 뒤로 아이티 국기와 태극기, 아이티 직업학교의 깃발이 휘날린다. / 한국교회봉사단 제공

"지진이 난 후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업학교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더 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지난 10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북쪽으로 123㎞ 떨어져 있는 도시 카라콜에서 아이티 직업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교회봉사단(김삼환 대표회장)의 해외사업법인 '월드디아코니아(오정현 이사장)'가 세운 학교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한국인 봉사단과 아이티 주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을 마친 뒤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흰 쌀밥에 불고기, 배추김치 등 한식을 나누어 먹었다.

카라콜은 아이티 북동쪽에 있는 인구 6200명의 도시다. 도심이라는 곳을 지나 직업학교로 가는 길에는 대략 100m마다 집만 한 채씩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게 아니라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끼워 맞춰 엉성하게 얹은 형태였다. 2층까지 올라간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슬레이트 지붕을 겨우 얹어놓은 곳이 그나마 아늑해 보였다. 잡초가 종아리 높이까지 자란 벌판엔 비닐봉지, 스티로폼, 각종 옷가지 등 쓰레기가 덩어리째 나뒹굴고 있었다. 2010년 규모 7.0의 강진으로 25만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아이티는 여전히 잿빛이었다.

덜컹거리는 15인승 승합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 도심을 통과했다. 40분쯤 되자 벌판 멀리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태극기 옆으로 흰 벽에 파란색 지붕을 덮은 반짝거리는 새 건물도 눈에 띄었다. 아이티에 최초로 생긴 직업학교였다.

봉사단은 직업학교를 세우는 데 지진 피해 성금 25억원을 들였다. 1만5750㎡의 넓이에 단층 건물 8개를 지었고 건물에는 20명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실과 컴퓨터실 6개, 화장실, 의무실, 식당과 기숙사를 마련했다. 직업학교인 만큼 19세 이상인 아이티인만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컴퓨터, 영어 등을 1년 과정으로 수강하고 나서 국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칠 예정인 김용신 선교사는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쯤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직업학교인 만큼 등록금도 저렴하다. 아이티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은 1년에 한화 3500원가량이고 사립대 학비는 한 달 1000원쯤이다. 교재나 유니폼 등은 학생이 따로 사야 한다. 하지만 아이티 직업학교의 한 학기(4개월) 등록금은 700원가량이다. 이 학비는 수업 교재비를 비롯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 이곳의 졸업장을 받으면 근처에 있는 공단 관리직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관리직원은 일반 근로자의 월 임금 140달러(약 16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0달러(약 47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아이티 직업학교 첫 번째 수업인 컴퓨터 실무 과정이 열렸다. 이 과정 수강생 10명이 이 학교 첫 입학생들이었다. 수업에선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법부터 엑셀 프로그램, 이메일 사용법 등을 배운다. 입학생 모들린(27)씨는 "컴퓨터를 접할 기회도,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는데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보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www.kmib.co.kr

한교봉, 한국교회 정성모아 아이티에 직업학교 건립

입력 2016-03-11 14:59

김삼환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오른쪽)과 오정현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이 10일(현지시간) 아이티 직업학교 머릿돌을 제막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25억원을 투입해 아이티 북부 카라콜에 직업학교를 세웠다. 아이티 직업학교 건립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프로젝트로 한국교회 전체가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아이티를 돕기 위해 동참했다.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월드디아코니아(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아이티 제2의 도시인 카라콜에서 직업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직업학교는 1만5750㎡ 부지에 강의실과 예배실, 교직원 숙소, 기숙사,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다.

김삼환 대표회장은 "한국도 65년 전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당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가 됐다"면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강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영적 축복"이라면서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지라도 영적으로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오정현 이사장도 "직업학교가 세워진 것은 토지를 제공한 미국 정부와 허가를 해준 아이티 정부 관계자, 건물을 세워준 한국교회봉사단과 의류제작회사 세아상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변과기대도 직업학교로 시작해 중국의 1000개 대학 중 상위권 명문 대학교가 된 것처럼 아이티 직업학교도 유명 대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4억5000만원의 헌금을 한 최상민 ESD 사장과 건축에 협력을 해준 세아학교, 건축감리를 맡은 최용준 서울 사랑의교회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 사장은 직업학교의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예배에는 손인웅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기사협) 이사장과 최희범 한교봉 상임고문, 조성기 공동대표, 천영철 사무총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모리스 퍼미 아이티 교육부 차관, 메어빌 귀오메 국가인재양성교육청장, 세자르 나무르 카라콜 시장 등 아이티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섬기면서 하나되고 하나되어 섬기자'는 목적 아래 설립된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 주요 봉사 연합기관으로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2010년 아이티 구호활동, 2014년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 태풍피해 지원, 2015년 네팔 지진피해 지원 등을 펼친바 있다.

국내 및 북한사업을 담당하는 기사협과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월드디아코니아로 구성된다.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발생 후 국민일보 CBS CTS 등과 37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한교봉은 향후 2년간 직업학교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며, 2010년부터 아이티에 지원한 총액은 45억원이다. 카라콜(아이티)=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기독교타임즈

홈 > 뉴스 > 교계/연합

아이티에 '희망'을 만든 한국교회

한국교회, 아이티 카라콜에 직업학교 준공
아이티 재건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 본격화
정부·기업·교회 공동으로 최대 산업단지 조성

2016년 03월 17일 (목) 05:57:57 아이티 카라콜=신동명 부장 journalist.shin@gmail.com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1시(현지시간 10일 오전 11시) 아이티의 북부 도시 카라콜(Caracol)에서 열린 '아이티 직업학교(KHPS=Korean Haitian Professional School)' 제막식 모습. ©아이티=신동명/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교회가 중남미 국가인 아이티에 최고 시설의 직업학교를 건립했다.

지난 2010년 1월 12일 진도규모 7.0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중남미 국가 아이티(Haiti)의 부흥과 재건사업에 힘써 온 한국교회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1시(현지시간 10일 오전 11시) 아이티의 북부 도시 카라콜(Caracol)에서 '아이티 직업학교(KHPS=Korean Haitian Professional School)' 준공식을 가졌다.

KD(Korean Diakonia)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WD 월드디아코니아(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10일 아이티 카라콜 산업단지(Haiti Caracol Ekam Site)에서 아이티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아이티 직업학교 관계자, 한국교회방문단, 한국크리스천기자회협회 공동 기자단, 현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직업학교를 통한 아이티 재건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KD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준공식 감사예배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아이티 정부와 함께 준공식을 갖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티를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아픔에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대한민국도 1950년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이라고 소개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처럼 또 다른 국가들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는다" 고 격려했다.

WD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도 "직업학교를 건립하기까지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과 아이티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정부, 한국교회봉사단, 의류회사 세아상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면서 "직업학교로 시작한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중국 3천여개 대학 중 100대 대학으로 성장한 것처럼 오늘 준공식을 갖는 아이티 직업학교가 아이티의 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고 기대했다.

▲ 메어빌 기오메 국가인재양성 교육청장

모리스 퍼미(Maurice Firmin) 아이티 교육부 차관, 메어빌 귀오메 국가인재양성교육청장, 세자르 나무르 카라콜 시장 등 아이티 정부 관계자들 역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메어빌 기오메(Mervil Guillaumette) 아이티 국가인재양성 교육청장은 "학교를 건립해 준 한국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정부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면서 "아이티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직업학교가 필요하다. 직업학교를 통해 아이티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세제르 라모르(Cezaire Lamour) 카라콜 시장도 "학교가 세워진 이곳이 황무지였는데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다" 면서 "아이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학교로 인해 소망이 생겼다. 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1시(현지시간 10일 오전 11시) 아이티의 북부 도시 카라콜(Caracol)에서 열린 '아이티 직업학교(KHPS=Korean Haitian Professional School)' 준공식 감사예배 현장에서 전기시설 공급 등으로 학교 건축에 크게 공헌한 ESD 최상민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교봉은 이날 ESD 최상민 사장을 아이티 직업학교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또 KD 한교봉은 최 사장 외에도 미국의 민간단체 글로벌커뮤니티, 아이티 현지의 국내기업 세아가 설립한 세아학교, 건축감리를 맡은 사랑의교회 최용준 집사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이티=신동명/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교회봉사단은 준공식에서 전기시설 공급 등으로 학교 건축에 크게 공헌한 ESD 최상민 사장과 글로벌커뮤니티, 세아학교, 사랑의교회 최용준 집사(건축감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데 이어 ESD 최상민 사장을 아이티 직업학교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체 아이티의 60% 지역에 전력 공급 사업을 펼치고 있는 ESD 최상민 사장은 한국교회봉사단의 총 공사 지원비와는 별도로 이번 아이티 직업학교 건립에 5억 원을 쾌척하며, 아이티

재건사업에 꿈을 키워오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아이티 재건을 위한 전체 공동모금액 37억원 가운데 이번 직업학교 건립사업에 25억원을 집중 투입했으며, 앞으로 2년간의 운영비 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랑의교회도 직업학교 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3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법인 또는 해외 교회 등이 참여하는 후원회와 이사회를 조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권한을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이티 직업학교는 2015년 고졸이상 학력 19세 이상 아이티인들을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야간반 컴퓨터 1개 과정을 교육중에 있다. 2016년 11월 신입생을 다시 모집할 예정이며, 향후 컴퓨터 외에 다른 전문 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아이티 직업학교 건립 사업은 한국교회봉사단 15개 교단 소속 교회들이 중심이 돼 모금활동을 펼쳐, 실질적인 열매를 거둔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활동의 결과물로, 아이티의 중장기적 재난구호를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교회봉사단은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진도 7.0의 강진으로 25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자 한국교회 언론과 함께 지진구호를 위한 공동모금을 결의하고 37억원을 모금, 초기 재난 긴급구호 사업과 함께 현지 NGO와 아이티개신교협의회, 미국교회 등과 협력해 콜레라 퇴치사업과 고아원 설립, 70여개 교회재건 등 중장기 사업에 힘써 왔다.

<아이티=한국 크리스천기자협회 풀 기자단>